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9-03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제 4 8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0가합7287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0. 12. 7.

판 결 선 고 2011.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이름의 네이버카페(D,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이었



는데, 위 카페는 영어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활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여서 회원수는 1500명 정도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대부분이 당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인 카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영어공부에 관한 활동을 하던 중 2010. 3. 초순경 피겨선수인 E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F 장관과 찍은 사진 중 어색한 장면에 대하여 패러디하여 올린 게시물(이하 '쟁점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크랩하여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폐음'이라고 표시하였다.

다. 그 후 F 장관은 쟁점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0. 3. 8.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요청을 받은 피고는 위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련 법령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기통신법'이라고 한다) 제54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



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  
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통신법 제54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 "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또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약관 제7조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약관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전기통신법 제54조 제3항, 제8항과 위 이용약관 제7조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을 받더라도 이용자의 통신비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심사를 통하여 사안에 따라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아무



런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4.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은 전기통신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수사관서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가 그러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한 사유, 즉 혐의가 있는 범죄사실 및 그러한 범죄사실과 요청 대상자의 관련성 정도 등을 실체적으로 심사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거나 성명만을 공개하는 등 그 범위를 제한하여 정보제공 하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과연 피고에게 이러한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해당 범죄와 정보제공 요청 대상자와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판단 등 형사법 영역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는 분야로서 법령에 의해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인터넷은 대부분 본인의 성명과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용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 없이는 개인신원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특징이 있는데 전기통신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용약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사관서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회원인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바,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기통신법 제54조 제8항에 따라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본사 내 개인정보보호팀에 설치하여 임원인 이사 1인, 직원인 팀장급 1인, 실무자 4인을 배치하고, 피고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 전담기구에서 관계 법령 및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2005. 11. 당시 정보통신부 제정)에 따라 위 요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은 2010. 3. 8. 수사관서의 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전기통신법 제54조에 의하여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기재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받아 위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아이디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위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원고에 관한 정보제공이 회원인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정보제공이 회원인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9-03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

판사      박병규 \_\_\_\_\_

판사      정지은 \_\_\_\_\_